

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4. 27 문발갑의원외 3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4. 27

다. 상 정 일 지 : 2000. 5. 1

(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 중 구 의원

나.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법('99. 8. 31. 법률 제6002호)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('99. 12. 31. 대통령령 제16672호)이 개정 공포되어,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,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, 회의일수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(안 제2조 제3조)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개최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~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개최하도록 함. (안 제4조)
-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,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함 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문 찬 주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가 '99년 8월 31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가 '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,

- 회의 일수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개최하며,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내지 8월중에 따로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에 개최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조례안으로, 상위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부 :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 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 (집회)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.

제5조 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.

제6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,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